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언금저축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유 : 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(3등급 → 2등급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⑤제6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0.6.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5.20 기준</u> <u>2020.3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20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 기준	<u>2020. 4. 30 기준</u>
오기 정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 기준	<u>2020. 4. 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 기준	<u>2020. 4. 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변경 내역으로 정정	-	<u>3년 이전 내역 삭제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오기 정정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	<u>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)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]	오기 정정	5) 집합투자증권 투자 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5) 집합투자증권 투자 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표준편차 : 11.32% 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<u>표준편차 : 18.62% 2 등급(높은 위험)</u>
	위험등급 변경 내역	-	<u>2020.6.2. : 3 등급 → 2 등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20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	납입요건	납입요건

<p>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반영</p>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</p> <p><u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 <p>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
		<p>공제제도</p> <p>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-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 <p>※ 지방소득세 별도</p>	<p>공제제도</p> <p>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

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20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20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6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20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 기준	<u>2020. 4. 30 기준</u>
(3) 업무위탁	전자증권법 추가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<u>전자등록기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주소 업데이트	-	<u>업데이트</u>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결의사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 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 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 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 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 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 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수 있습니다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〈신설〉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

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			<u>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</u> <u>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예탁결제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	<u>전자등록기관</u>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</u> <u>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	<u>전자등록기관</u>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	600만원 (900만원)	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	300만원 (700만원)	12%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

-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-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